

자료 [] 보호 []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(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)
요청인 (법 제38조 에 따라 선임 된 자 포함)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
요청사항	자료 보호(보호기간 연장) 요청 요지 및 이유			
	보호대상 자료 목록	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

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료 [] 보호
[] 보호기간 연장 를(을)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요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· 화학물질안전원장 · 유역(환경)환경청장

· 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(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 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위 요청사항란 중 자료 보호(보호기간 연장) 요청 요지 및 이유 칸을 작성할 때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요청인	처리기관							
	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							
자료보호(연장) 요청서 작성	⇒	접수	⇒	검토	⇒	결재	⇒	통보